

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

(의안번호 제70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8. 20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8. 21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1. 8. 29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사유주문

- 남산공원내 토지 기부채납

3. 주요골자

□ 기부채납 재산내역

○ 토지현황

- 소재지 :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70-3번지 외 8필지
- 지 적 : 9,956㎡
- 지 목 : 전(8필지), 답(1필지)
- 재산가액 : 30,958천원

○ 기부자

- 주 소 :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
- 성 명 : 조우억만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남산공원 내에 위치한 고성군 동외리 370-3번지 외 8필지 9,956㎡를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 조우억만이 2001년 8월 1일 등기이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재산으로서 이를 채납하여 남산공원 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8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